

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 통합정보 시스템(USIS) 구축 사업 추진

정부 부처에 산재돼 있는 하도급거래정보를 하나로 묶는 불공정하도급거래통합감시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정부 부처에 산재돼 있는 하도급거래정보를 하나로 묶는 ‘불공정하도급거래통합정보시스템’을 올 11월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결과가 누적돼 매년 수만개 업체의 하도급 자료가 축적되고 하도급법 적용 범위가 서비스업종까지 확대돼 적용대상 사업자수가 대폭 늘었지만, 현재의 정보시스템으로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고, 법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활용하는 사전대응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도급거래 통합 감시망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불공정하도급거래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불공정하도급 발생 위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고 경보발령 체계 확보로 조기 확산방지 능력을 갖추게 되며 특히 업종, 업체, 법 위반 유형에 따라 체계적인 정보 관리 및 분석이 가능하고 업체에 대한 사건처리의 진행상태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편집자 주]

1. 추진 배경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서비스업까지 확대(2005. 개정)되고 매년 수만개 업체의 거래실태자료가 축적되어 기존 시스템으로 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2. 제도개선 내용

각 기관에 산재한 하도급관련 정보를 연계하고 기존 사건처리 정보시스템에 법 위반혐의 누적업체 경보발령 기능을 추가하여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토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건설하도급 관련)과 중기청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정보, 서면실태조사 범위반협의 정보 등에서 포착되는 범위반 협의 정보를 업체별로 관리하고 협의가 누적된 업체에 경보발령→현장조사 대상업체 선정 시 활용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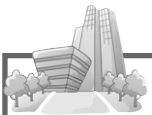
3. 추진실적 및 계획

현재 시스템 통합 착수단계이며 '08.11.30까지 구축 완료 계획이다.

'08. 6. 시스템 통합을 위한 용역을 발주, 사용자 요구분석 단계를 거쳐 현재 통합시스템 설계 단계에 있다. 9월 이후 대외기관 정보 연계, 경보발령 알고리즘 설계, 시스템 통합 완료 예정(11.30.)이다.

4. 기대효과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조사 대상업체 선정의 과학성을 제고하며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한다.◎



건설용어 한마디

기업도시

대기업과 협력업체 등이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산업, 연구, 관광·레저, 업무 등 경제활동을 위한 주된 기능은 물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족적 복합기능을 함께 갖춘 도시를 말한다.

기업이 투자계획을 세워 도시를 개발한 뒤, 상당수의 인력과 자본을 기업도시로 이전해 간다는 점에서 산업도시와는 다르다.

대표적인 기업도시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의 니스, 일본의 도요타 등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6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도시특별법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

유형별로는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개발주체에 따라 단일기업주도형, 컨소시엄형, 민관합작형 등으로 나뉘고 최소 개발 면적은 330만㎡이다.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역으로 2005년 7월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충북 충주(지식기반형), 전북 무주(관광레저형)를 비

롯해 2005년 8월 태안(관광레저형)과 영암·해남(관광레저형)이 선정됐다.

사업지역은 국가균형발전 기여도, 토지확보의 용이성, 지속발전 가능성, 지역특성·여건부합성, 사업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해 선정하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건전성과 자금 및 산업시설 투자계획,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등을 고려, 시행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기업도시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와 입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기업도시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때 41개 법률, 88개 인·허가사항을 일괄 승인해 주는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기반시설 비용의 출자총액 제한 미적용 및 은행 신용공여 한도 완화, 토지 등 현물출자 허용 등 자금조달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법인세, 소득세와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 및 개발부담금 등 6개 부담금을 감면,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